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3년 12월 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3년제3회 추경예산안(A)	2003년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319,168,225	309,091,139	10,077,086	3.3
지 방 세	57,835,000	57,835,000	0	-
세 외 수 입	72,223,837	69,591,341	2,632,496	3.8
지방교부세	45,394,700	45,284,700	110,000	0.2
지방양여금	27,076,692	27,081,692	△5,000	△0.02
조정교부금	29,479,200	29,479,200	0	-
보 조 금	76,158,796	74,819,206	1,339,590	1.8
지 방 채	11,000,000	5,000,000	6,000,000	120

II. 세입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

■ 총 계	-----	10,077,086천 원
○ 세외수입	-----	2,632,496천 원
○ 경상적세외수입	-----	△2,432,503천 원
- 재산임대수입	-----	△5,000천 원
· 도라전망대 기념품 판매소 임대료 감		△5,000천 원
- 사용료수입	-----	△38,131천 원
· 공릉 국민관광지 입장료(문화체육과)		△20,000천 원
· 도라전망대 망원경사용료(문화체육과)		5,000천 원
· 여성회관 대관료(사회복지과)		4,129천 원
· 임진각주차장 사용료(교통행정과)		61,200천 원
· 노상주차장 사용료(교통행정과)		△23,625천 원
· 제3땅굴 관광사업 수입(도라산사업소)		△64,835천 원
- 수수료수입	-----	33,920천 원
· 여성회관 수강수수료(사회복지과)		33,920천 원
- 사업수입	-----	△2,423,292천 원
· 골재채취 판매수입(시설관리공단)		△2,423,292천 원
○ 임시적세외수입	-----	5,064,999천 원
- 재산세매각수입	-----	296,802천 원
· 국유재산매각수입(회계과)		98,473천 원
· 사유재산매각수입(회계과)		198,329천 원
- 부담금	-----	4,464,020천 원
·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 부담금(환경)		△250,000천 원
· 정태진선생 기념사업 부담금(문화체육과)		100,000천 원
· 금촌택지개발지구 하수도부담금(하수도과)		4,614,020천 원
- 잡수입	-----	304,177천 원
· 금촌구획정리지구 사유지 환지청산보상금(회계과)		59,901천 원
· 산림형질변경허가 대체조림비(산림)		95,000천 원
· 수치지도수정 제작사업 부담금반환금(도시)		184,188천 원
· DMZ영상관 스티커사진 촬영(도라산)		△17,700천 원

○ 지방교부세 -----	110,000천 원
○ 지방교부세 -----	110,000천 원
- 지방교부세 -----	110,000천 원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특별교부세)	110,000천 원
○ 지방양여금 -----	△5,000천 원
○ 지방양여금 -----	△5,000천 원
- 지방양여금 -----	△5,000천 원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회복지과 감)	△5,000천 원
○ 보조금 -----	1,339,590천 원
○ 국고보조금 등 -----	1,422,293천 원
- 국고보조금 등 -----	1,422,293천 원
· 총무과외 7개부서(총 35건)	1,422,293천 원
※중액분 20건(2,233,915천원), 감액분 15건(811,622천원)	
○ 시·도비보조금 -----	△82,703천 원
- 시·도비보조금-----	△82,703천 원
· 국고분(총무과외 5개부서)	△165,028천 원
※중액분 13건(187,823천원), 감액분 9건(352,851천원)	
· 도비분(도세과외 7개부서)	82,325천 원
※중액분 11건(98,422천원), 감액분 2건(16,097천원)	
○ 지방채 -----	6,000,000천 원
○ 국내차입금 -----	6,000,000천 원
- 지역개발기금 -----	6,000,000천 원
· 공설운동장 조성	6,000,000천 원

Ⅲ. 검토의견

- 금번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319,168,225천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 309,091,139천원보다 10,077,08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과 대비하여 3.3%가 늘어난 규모임.

-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 319,168,225천원의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57,835,000천원(18.1%) 세외수입 72,223,837천원(22.7%), 지방교부세 45,394,700천원(14.2%) 지방양여금 27,076,692천원(8.5%) 조정교부금 29,479,200천원(9.2%), 보조금(국도비) 76,158,796천원(23.9%) 지방채 11,000,000(3.4%)으로 편성되었음.

- 금년도 세입예산액 319,168,225천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0,058,837천원(40.7%)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189,109,388천원(59.3%)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에는 증감(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정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32,503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064,999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2,632,49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경상적세외수입은 공릉 국민관광지 입장료 20,000천원과 노상주차장 사용료 23,625천원, 제3땅굴 관광사업수입 64,883천원 등 사용료수입이 대부분 감액 계상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여성회관 수강 수수료 33,920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음.

사업수입 중 골재채취 판매수입은 2,423,293천원이 대폭감액 계상된 것으로 동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1,195,000천원을 계상하였다가 지난 제1차 추경에서 2,945,000천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고 다시 제2차 추경에서 596,700천원을 감액 편성한 후 이번 제3차 추경에서 다시 2,423,292천원을 대폭 감액 편성한 것임.

그러나 동 사례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을 위해 지극히 잘못된 사례로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판매수입의 정확한 추계와 예측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해야 할 것임.

공유재산매각수입 198,329천원은 지난 2001년 매각한 금촌역 앞 구거부지 매각대금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 2003년도 이후 분할 납부분이 조기상환 되었기 때문으로 매수자들이 등기 절차를 조기에 마치기 위해 매각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임.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광역화 설치에 따른 부담금 250,000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소각장 건설사업에 따른 비용 중 김포시 부담액이 정산결과 당초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며,

일반부담금 중 정태진선생 기념사업 부담금 100,000천원이 계상된 것은 정태진선생 생가이전 복원공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정태진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하는 것임.

금촌택지개발지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4,614,020천원은 금촌택지개발지구 오수배출 처리에 대한 금촌 하수처리장에서의 연계처리 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부담총액의 잔액 징수분이 계상되었음.

지방교부세는 110,000천원은 행정자치부 지정 정보화대상마을인 적성면 객현리 산머루 정보화마을의 마을정보센터 환경구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었음.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와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논 농업직불제, 쌀생산 조정제 지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고 경로연금과 장애인 생활시설 급여, 광역소각 시설설치비 등은 감액 계상되는 등 국도비지원 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임.

지방채수입 6,000,000천원은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바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발행 수입을 계상한 것임.

이상과 같이, 제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경안 중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추가 발행한 지방채발행 수입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그러나, 일부예산의 경우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해 세입예산의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와 매번 추경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